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7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진성준ㆍ허 영ㆍ박해철

김주영 · 강선우 · 양문석

위성곤 • 정을호 • 정태호

임광현 • 문진석 • 김태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하면서,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 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 증 대에 불가결한 사항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 전문기관의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 2 신설 등).

법률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장에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 닌 위원
- 2. 제41조제1항·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 연구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 3.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 기관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 <삭 제> 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 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 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 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위원 가운데 공무 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제2항과 제68 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 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반

 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